

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방안

(’22. 3. 4, 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수립 배경

-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방역대응 전략 수정
- 확진자·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,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사업장에서 자율관리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

2. 사업장의 접촉자 관리 기본방향

- (원칙) 기관·개인별 자율 방역(법적 의무 없음)
- (적용범위) 가구,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
 - * 감염취약시설 3종 : ① 장기요양기관(요양병원,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), ② 정신건강시설, ③ 장애인시설
- (관리기준) 유증상자 출근 중지(재택근무 등 활용) 및 동네 병·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,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확인시 출근 가능
- (활용)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되,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

3. 확진자·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기 준	변 경1 (2.9~)	변 경2 (3.1~)
확진자 격리기준			
격리기간	(접종완료자) 7일 (미완료자) 10일	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	"좌동"
격리기간 기산일	(무증상자) 확진일 로부터 (유증상자) 증상발생일 로부터	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	"좌동"
접촉자 격리기준			
격리대상	밀접접촉자 전체	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	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
동거인 관리기준	(접종완료자) 7일 공동격리 (미완료자) 7일 공동 격리 + 7일 추가격리	(접종완료자) 7일 수동감시 (미완료자) 7일 공 동격리	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* 10일간 권고준수기간

4. 사업장의 확진자·접촉자 관리 주요내용

①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

-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
-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,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,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
-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
 -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,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
 - * 주의기간 수칙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

② 접촉자 대상자별 관리방안

<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·관리 우선순위 >

우선순위	접촉자 조사 대상
1순위	■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2순위	(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) ■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
3순위	■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*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

※ 상기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

1순위 :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

-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
 - *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,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
- ② 확진자가 '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'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
 - *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보건소의 '조사대상 접촉자'임

③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

* 수동감시 :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자에게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고, 수동감시 대상자는 수칙을 자율 준수하는 관리 방식

- 진단검사*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, 음성 확인 후에도 확진자(재택치료자)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10일 간은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

*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

※ 권고 수칙

- 동거가족 확진 인지후 3일 이내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, 그 이후 10일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
-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,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 모임을 제한
-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

2순위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, 15분 이상 대화 등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,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
- 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

3순위 :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
- ③ 증상 관찰하면서 출근 가능

③ 접촉자 대상자별 검사방안

○ 만 60세 이상 또는 검사대상 지정 문자 받은 자*

*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, 해당 확진자로부터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은 자도 해당

- PCR 검사 우선순위로,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 가능

○ 만 60세 미만

- 증상이 있는 경우, 동네 병·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**PCR 검사** 실시
 - *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, PCR 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
- 증상이 없는 경우,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(자택 또는 선별진료소)
 -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 지체없이 유전자검사(PCR)를 실시하고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**자택 대기**
 - * (자택 검사 시) 검사결과 양성 키트 밀봉·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방문, 신속항원검사 양성임을 알리고 PCR검사 실시
 - * (선별진료소 검사 시) 검사관리자 안내에 따라, 지체없이 PCR검사 실시

【주의사항】

-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착용,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
-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,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

-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, 필요 시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

※ 특히, 만 60세 이상 고령자, 고위험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의 경우 조기진단·치료가 중요하므로, 진단검사 적극 실시 독려

5 사업장 내 공통 안내사항

- 감염예방을 위한 종사자 자율 건강관리 안내
 -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출근 중지(재택근무 활용)하고,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진료 및 검사를 받도록 권고
 - 증상이 없으나 접촉 의심될 경우 자가검사 후 자율관리
- 마스크 착용(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)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안내
-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
- 대면접촉 줄이기(사적모임 자제)
- 소독·환기 등 사업장 위생관리 철저

□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절차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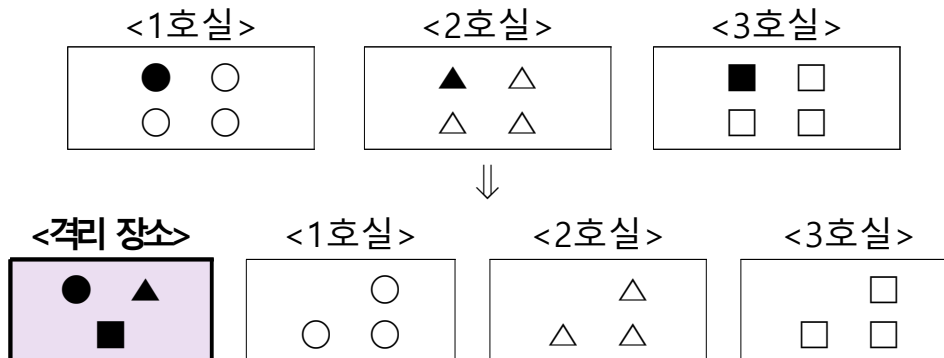
업무내용	업무절차
 ① 확진자 확인/안내	○ 확진자 본인이 자율 보고로 확인 ○ 확진자에 복무관리 안내 ○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공지
 ②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	○ (주관) 사업주 및 방역관리자 ○ (대상)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기준 마련 * 기숙사 등 동일 공간 생활자, 마스크 벗고 식사 및 15분 이상 대화한 자, 동일 공간(부서) 근무자 등
 ③ 접촉 명단작성	○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 접촉일, 검사일 기입 ○ 보건소 요청시 접촉자 명단 제출
 ④ 신속항원검사 (개인용)	○ 접촉자 관리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주기·횟수 차등 - 최초 인지 이후 2~3회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 ○ 음성시 업무지속, 양성시 PCR 검사

□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 시 관리기준 예시

■ <사례1> 기숙사 내 1명 확진자 발생 → 확진자 공간 분리하여 격리



■ <사례2> 기숙사 내 다수 확진자 발생 → 확진자 공간 분리하되 공동격리 가능



* 표기방법 : (확진자) ●, ▲, ■, (접촉자) ○, △, □

1 공통 부분

Q1.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의 기본방향과 주요 변경사항은?

-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.
- 2월 9일부터 접촉자 대상 및 격리기간 축소와, 자기기입식 조사를 적용하였고,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Q2. 보건소 관리대상의 정확한 범위는?

- 보건소에서는 ‘조사대상 접촉자’와 ‘격리대상 접촉자’를 관리합니다.
 - ‘조사대상 접촉자’는 확진자의 동거인,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합니다.
 - ‘격리대상 접촉자’는 조사대상 접촉자 중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만 해당됩니다.
- 이외 시설·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(지침)에 따라 관리하시거나, 자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Q3. 자율방역 원칙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장 방역관리자의 역할은?

-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체에 대해서 관리했다면, 변경 기준에 따라서 보건소 관리대상 및 기준이 축소됩니다.
- 보건소 관리 범위 외에는 각 사업장 별로 자체 지침에 따라 관리하게 되므로 사업장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.

2 확진자 조사 및 관리

Q1.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조사 및 공지는 필요하지 않나요?

-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진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전략 변경 취지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.
- 1월 24일부터 보건소에서 동선조사를 포함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한 사항도 참고 바랍니다.

Q2.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?

- 확진 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.
-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, 출근,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.

3 접촉자 조사 및 관리

Q1. '적절한 보호구 없이 2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'의 관리방안은?

- 보건소 관리대상자가 아니며, 사업장별 자체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의 방역관리자가 접촉자로 분류하여 대응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대상에 대하여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하되, 신속 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를 권고합니다.

Q2. 접촉자 조사 3순위의 동일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의 범위는?

- 동일공간(부서)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구분된 공간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고, 분리된 공간 면적에 따라 사업장별로 접촉자 범위의 자율 설정도 가능합니다.
- 동일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타기관·타부서로 파견·지원 나간 직원의 경우에는 동일공간 근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교대 근무조의 경우, 확진자의 동시간대(예시 : 증상발생일 2일 전, 무증상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) 노출자로 접촉자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Q3.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양성자의 접촉자는 접촉자로 분류하는지?

-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며,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의 접촉자라도 개인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였으면(진술기반)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

Q4. 사업장 내 구내 식당에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 옆에서 식사를 하던 동료에 대한 접촉자 조사 및 관리는?

- 사업장은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.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.

Q5.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'수동감시' 대상자인 경우 근무형태는?

-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(PCR 검사) 결과 확인 전까지 가급적 재택근무로 전환하되, 음성 확인 후에는 출근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확진자(재택치료자)의 검사일(검체 채취일)로부터 10일 동안은 「권고 수칙(p.3 참고)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Q6. 전파 방지를 위해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와 적정 대상 및 주기는?

-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의 경우, 접촉자 조사·관리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인지 이후 2~3회 검사 실시를 권고합니다.
- 예방조치를 위한 주기적 검사는 사업장 별 자체 기준을 정하실 수 있되, 사업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, 신속항원검사 과정과 결과 등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시길 권고드립니다.